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2316호

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특별시공고 제 2024-1395호)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8일
서울특별시

1. 허가구역 대상지역(변동없음)

구분	자치구	대상지역	면적(k㎡)
합계			27.29
서울특별시	강남구	수서동, 개포동, 세곡동, 율현동, 자곡동, 일원동, 대치동 일원	6.02
	서초구	양재동, 우면동, 방배동, 내곡동, 신원동, 염곡동, 원지동, 서초동 일원	21.27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(변동없음)

- 2024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도지역		면적	
		당초	변경
도시지역	주거지역	60㎡ 초과	60㎡ 초과
	상업지역	150㎡ 초과	150㎡ 초과
	공업지역	150㎡ 초과	150㎡ 초과
	녹지지역	200㎡ 초과	100㎡ 초과

4. 허가구역 지형도 및 토지조서 :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

*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